

환경서비스업 준수사항

	환경전문공사업	환경관리대행기관	환경컨설팅회사
근거법령	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	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	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
준수사항	<p>1. 전담 기술인력 구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기분야 : 4명 이상 - 수질분야 : 4명 이상 - 소음진동 분야 : 3명 이상 <p>※ 등분야별 등록 세부기준 참조</p> <p>2. 실험기기 구비(수질분야에 한함)</p> <p>3. 등록 후 2년 이내 영업실적</p> <p>4.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등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표자 또는 상호 - 영업소의 소재지 - 실험기기의 소재지 - (해당시)측정분석대행계약의 체결사항 - 전담 기술인력 	<p><대기·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></p> <p>1. 전담 기술인력 구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사 또는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기사 1인 이상 - 기사 또는 업무 경력 4년 이상 산업기사 1인 이상 - 산업기사 1인 이상 - 분석기사 1인 이상 <p>※ 등분야별 등록 세부기준 참조</p> <p>2. 시설 및 장비 구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·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장비, 운반용 차량 - 실험실 : 실용면적 20㎡ 이상 <p><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></p> <p>1. 지정요건 충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측정대행업, 환경전문공사업 등을 등록한 자 <p><공통></p> <p>1. 지정 후 1년 이내 영업실적</p> <p>2.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등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대행기관의 양도·상속, 합병 - 소재지의 변경 -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- 기술인력 또는 시설장비의 변경 	<p>1. 전담 기술인력 구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급인력 1명 이상 - 인력인력 2명 이상 <p>2.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실적</p> <p>3.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등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- 대표자 및 임원 - 기술인력 - 사업목적(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)
등록 세부기준	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규칙 [별표 4]	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1]	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[별표 1]